

# **2020학년도 제3차 <제346차 이사회 회의록>**

**2020. 8. 20.**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2020학년도 제3차

<제34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20. 8. 20(목) 07:30 ~ 10:20 (회의소집 통보일 : 2020년 8월 12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메이플룸(5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영래, 박형주, 김선용 (12인)
- 감사 : 임종인, 윤경식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의료원장) 박해심, 교무처장 권용진, 기획처장 심규철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예산팀장 윤혜정, 의료원 기획팀장 김의섭(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박병완 (1인)
- 법인사무처 : 사무처장 박재호, 신창규(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심규철 기획처장, 박병완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 1 -

이사 이영현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46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기획팀-211호(2020. 8.12)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2호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3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 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4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7호 2020학년도 아주대학 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8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의안 제10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11호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2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13호 2020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의 13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 국고지원 사업 추진, 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대비, 관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실무교육 위주의 전문 직업교육 수행 등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주요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숙

이사 이영현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기획처, 산학처, 입학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p> <p>1. 교학기획처장 : 교수학습혁신센터, 생활관,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p> <p>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창업교육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p> <p>3. 입학처장 : 입학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p> <p>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p> <p>1. 학술정보센터</p> <p>2. 산학협력단</p> <p>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단</p> <p>4. &lt;삭제 2019.2.14&gt;</p> <p>5. &lt;삭제 2019.2.14&gt;</p> <p>6. 혁신지원사업단</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2조(기 구) ① 내지 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p> <p>1. 학술정보센터</p> <p>2. 산학협력단</p> <p>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단</p> <p>4. &lt;삭제 2019.2.14&gt;</p> <p>5. &lt;삭제 2019.2.14&gt;</p> <p>6. 혁신지원사업단</p> <p>7. 평생교육원</p>
	<p><u>부 칙</u></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2 호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년 등의 사유로 4명이 퇴직하여 2020년 현재 전임교원은 26명이며 확보율은 52%입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평가에 대비하고 2021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준비를 위해 정년트랙 2명, 비정년트랙 1명에 대한 채용계획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임용에 대해서 올해 말 이사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진행하되, 신입생 충원율 및 2021학년도 예산 편성 추이를 보고 최종 제청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70%는 국고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3 -

박병완

이사 이영현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3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사장 :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이사장 : 정관 제67조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 학교 교원 또는 법인 이사 6인과 외부위원 1인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총장 추천자 중 3인과 이사 중 3인 그리고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우선 총장 추천자 여섯 분 중 세 분의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추천 순위를 적어 주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총장 추천자 중 오태일 교수, 류지호 교수, 이제욱 조교수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사장 : 다음으로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법무법인 화현 신경식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법무법인 화현 신경식 변호사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사장 :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아주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문길주 이사님, 김성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이사 문길주,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승낙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문길주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이사, 오태일 교수, 류지호 교수, 이제욱 조교수 6인과 신경식 변호사 1인을 2020.9.1.부터 각각 임기 1년과 임기 3년의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경식

이사

이영현

## 제 4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전산·정보화 분야에서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중심병원의 선도적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써 의료원 산하에 정보혁신실을 신설하고 정보혁신실 산하에 정보기획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보혁신실 산하에 정보기획팀, 정보관리팀, 의료빅데이터센터를 두고 2명을 증원하여 정보혁신실장 주관하에 총 10명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 성 : 의료정보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의료진들 중에서 이러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 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7 조(의료원장) ①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료원장 산하에는 첨단의학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삽입>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및 부속병원을 둔다.	제 7 조(의료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원장 산하에는 첨단의학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정보혁신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및 부속병원을 둔다.
제 7 조의 2 (의료원 운영회의)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 운영회의를 두며, 의료원장, 의과대학	제 7 조의 2 (의료원 운영회의)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 운영회의를 두며, 의료원장, 의과대학

<간서명란>

이사장

측 호석

이사

- 5 -

이수정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장, 간호대학장,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lt;삽입&gt;과 의료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료원 운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장, 간호대학장,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과 의료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기획조정실</b></p> <p><b>제 9 조(기획조정실)</b>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u>실장과 부실장을 둔다.</u></p> <p>②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p> <p>③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u>정보관리팀</u>, 감사팀 및 <u>의료빅데이터센터</u>를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기획조정실</b></p> <p><b>제 9 조(기획조정실)</b>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u>기획조정실에는 실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을 둘 수 있다.</u></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lt;삭제&gt; 감사팀 &lt;삭제&gt;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lt;삭제&gt;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대외협력실</b></p> <p><b>제 9 조의 3 (대외협력실)</b>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대외협력실을 두며, 대외협력실에는 실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을 둘 수 있다.</p> <p>② 대외협력실장은 의료원 대외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p> <p>③ 대외협력실에는 국제진료센터, 홍보팀, 대외협력팀을 둔다.</p> <p>④ 국제진료센터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홍보팀과 대외협력팀에는 각 팀장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대외협력실</b></p> <p><b>제 9 조의 3 (대외협력실)</b> ① 내지 ④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장 정보혁신실</b></p> <p><b>제 9 조의 4 (정보혁신실)</b>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정보혁신실을 두며, 정보혁신실에는 실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을 둘 수 있다.</p> <p>② 정보혁신실장은 의료원 전산·정보화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p> <p>③ 정보혁신실에는 정보기획팀, 정보관리팀, <u>의료빅데이터센터</u>를 둔다.</p> <p>④ 의료빅데이터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정보기획팀과 정보관리팀에는 각 팀장을 둔다.</p>
<p><b>제 7 장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b></p>	<p><b>제 8 장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b></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6 -

이영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제 8 장 부속병원	제 9 장 부속병원
제 9 장 연구기관	제 10 장 연구기관
제 10 장 첨단의학연구원	제 11 장 첨단의학연구원
제 11 장 보직 및 임기	제 12 장 보직 및 임기
<p>제 21 조의 2(자격 등) ① 첨단의학연구원의 부원장, 기획조정실의 부실장, 대외협력실의 부실장, &lt;삽입&gt;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 각 교실(과) 주임교수(과장), 부속병원의 치과병원장, 내과부장, 외과부장, 교육수련부장, 임상과장, 암센터장, 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 권역외상센터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p> <p>② 제1항외의 부서단위 (부)실장,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임용교원을 보할 수 있다.</p> <p>③ 의원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특별임용교원 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된 비교원 의사(촉탁의사)를 보할 수 있다.</p> <p>&lt;이하 생략&gt;</p>	<p>제 21 조의 2(자격 등) ① 첨단의학연구원의 부원장, 기획조정실의 부실장, 대외협력실의 부실장, 정보혁신실의 부실장,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 각 교실(과) 주임교수(과장), 부속병원의 치과병원장, 내과부장, 외과부장, 교육수련부장, 임상과장, 암센터장, 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 권역외상센터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p> <p>② 내지 ⑥ &lt;현행과 같음&gt;</p>
제 12 장 보 칙	제 13 장 보 칙
	<p>부 칙</p> <p>(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제 5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이 사 장 : 산하기관 직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원 산하 정보혁신실 신설과 이사회 동의 임명 보직에 정보혁신실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츄호석

이사

- 7 -

이영현

이사 이영현

##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46조 (임용)</b>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은 임용 당시 65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 임기 중에는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li> <li>2. 면직 중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li> <li>3. 강사의 임용</li> </ul>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u>&lt;삽입&gt;</u>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b>&lt;이하 생략&gt;</b></p>	<p><b>제46조 (임용)</b> ① 내지 ② &lt;현행과 같음&gt;</p>
<p><b>제92조 (의료원)</b> ①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원 및 의학연구의 업무를 조정 · 통합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p> <p>② 의료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p> <p>③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및 대외협력실장 <u>&lt;삽입&gt;</u>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p>	<p><b>제92조 (의료원)</b> ① 내지 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u>정보혁신실장</u>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부교수 이상</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lt;삽입&gt;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p> <p>④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p> <p>1. 현대아주의원</p> <p>⑥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⑦ 의료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p>	<p>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p> <p>④ 내지 ⑦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전문대학</b></p> <p>제94조 (본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교학기획처, 산학처, 입시취업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교학기획처장과 산학처장, 입시취업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p> <p>③ 각 처의 하부조직 등 세부사항은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전문대학</b></p> <p>제94조 (본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교학기획처, 산학처, 입학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교학기획처장과 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제46조 및 제92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제 6 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 부품단종 및 수리가 불가하여 불용 판정된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전산장비 및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1,079점, 취득금액 2,241,059,055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9 -

이영현

이사 이영현

이사 김성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7 호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사장 :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2019학년도 결산에 의거한 전기이월자금의 예산편성,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 예산편성, COVID-19 영향에 따른 수입예산 감소, 각 부서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 이월 또는 보류 등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조정, 환자안전, 감염 예방, 법적사항 준수 및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29,045백만원이 감소한 723,81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하다. )

이사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하반기에 많이 노력하여 의료수익이 1차 추경예산을 초과하고 전년도 실적 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비율 증가 등 수익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건비에 2020학년도 임단협 결과가 미반영되어 있어 예비비 40억원 전액이 인건비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므로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 올해 원만한 임단협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윤성복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영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 10 -

이사 이영현

▣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료 수 입	596,000	643,500	-47,500
	의료 외 수 입	40,293	38,738	1,555
	차 입 금	16,971	20,000	-3,029
	기 타 수 입	15,553	15,173	380
	전 기 이 월 자 금	54,995	35,445	19,550
	계	723,811	752,856	-29,045
지 출	의료 지 출	531,694	548,626	-16,932
	의료 외 지 출	33,604	31,809	1,795
	고정자산지출	49,006	60,037	-11,031
	차 입 금 상 환	11,584	11,763	-179
	전 출 금	55,110	55,391	-281
	기 타 지 출	4,618	9,238	-4,621
	차 기 이 월 자 금	38,196	35,992	2,204
계		723,811	752,856	-29,045

제 8 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발의.

교무처장 권용진 : 본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5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다음으로 재임용 대상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명, 특별임용교원 동일직급 재임용 2명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재임용 후보자의 경우 SCOPUS 게재 예정인 논문 실적을 조건부로 반영하였으며 2020년 8월 31일까지 논문 출판이 되지 않을 경우 재임용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승진임용 대상자는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8명,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은 4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연구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은 대상인원 18명 중 4명이 제청되었으며,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은 대상인원 13명 중 9명이 제청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 성 : 의료원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대상자 중 실적 미충족 등의 사유로 제청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1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대상자 18명 중 11명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훌륭한 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성중

이사 이영현

**이사 김성** :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분들이 성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들로 생각되는데 단순히 규정에 맞추어 최소 요건만을 충족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 가. 신규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소재현	조교수
	소프트웨어학과	유종빈	조교수
	소프트웨어학과	오상은	조교수
	금융공학과	민찬호	조교수
	문화콘텐츠학과	홍경수	부교수
	신소재공학과	Ashutosh Sharma	조교수
	다산학부대학	신호재	조교수
	국제학부	한상곤	부교수

- 이상 본교 8명 -

#### 나. 재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융합시스템공학과	천상욱	조교수
	소프트웨어학과	Yenewondim Sinshaw	조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	석좌교수
	스포츠레저학과	이현서	대우부교수

- 이상 본교 4명 -

#### 다. 승진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신소재공학과	안병민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유태현	교수
	경영학과	김승환	교수
	경제학과	김정호	교수
	경제학과	김한성	교수
	경제학과	박영준	교수
	심리학과	김은하	교수
	약학과	서민덕	교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전축학과 전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교육대학원	김진영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이 황	부교수	2020.9.1.~2026.8.31.(6년)
	황원준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신효정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 료 원	의학과(해부학교실)	박선아	교수 2020.9.1~정년
	의학과(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장훈	교수 2020.9.1~정년
	의학과(안과학교실)	송지훈	교수 2020.9.1~정년
	의학과(방사선종양학교실)	노오규	교수 2020.9.1~정년
	의학과(뇌과학과)	장재락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학과(의료정보학과)	윤덕용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학과(의과학연구소)	이영수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학과(종양혈액내과학교실)	최윤석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학과(외과학교실)	이수형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학과(신경외과학교실)	송지혜	부교수 2020.9.1.~2026.8.31.(6년)
	의학과(응급의학과교실)	안정환	부교수 2020.9.1.~2026.8.31.(6년)
	간호학과	안정아	부교수 2020.9.1.~2026.8.31.(6년)
	간호학과	이영진	부교수 2020.9.1.~2026.8.31.(6년)

- 이상 본교 12명, 의료원 13명 -

## 제 9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권용진 :** 먼저 전임교원의 해외여행 사전허가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고려 사전허가 신청 의무를 명확히 하되 7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원인사규정의 별지 서식 임용심사평정표를 교수업적평가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은 정년트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겸직 허가 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우 교육중점교수의 내국인 임용 및 파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b>제22조(승진·재임용 요건)</b> 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u>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전 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서식)</u> 60점 이상으로 한다.		<b>제22조(승진·재임용 요건)</b> 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전 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b>제32조(해외여행)</b> <신 설>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및 보강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여행허가원을 출국예정 7일 전까지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제32조(해외여행)</b>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원과 휴강조치허가원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별지서식) 전임교원 임용심사평정표		(별지서식) <삭 제>																																																						
<table border="1"> <thead> <tr> <th>피평정자</th> <th>소 속 :</th> <th>성 명 :</th> <th colspan="3"></th> </tr> <tr> <th>평가영역</th> <th>평 가 항 목</th> <th>평가 단위 (점 수)</th> <th>1 차 평정</th> <th>2 차 평정</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 교육</td> <td>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td> <td rowspan="4">36</td> <td rowspan="4"></td> <td rowspan="4"></td> <td></td> </tr> <tr> <td>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td> <td></td> </tr> <tr> <td>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td> <td></td> </tr> <tr> <td>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td> <td></td> </tr> <tr> <td rowspan="3">2. 연구</td> <td>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td> <td rowspan="3">36</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d></td> </tr> <tr> <td>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3. 봉사</td> <td>○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td> <td>18</td> <td></td> <td></td> <td></td> </tr> <tr> <td>4. 기타</td> <td>○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 학내학과내의 인화,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td> <td>10</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피평정자	소 속 :	성 명 :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평가 단위 (점 수)	1 차 평정	2 차 평정		1. 교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	36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2. 연구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36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3. 봉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8				4. 기타	○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 학내학과내의 인화,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				계		100			
피평정자	소 속 :	성 명 :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평가 단위 (점 수)	1 차 평정	2 차 평정																																																				
1. 교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	36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2. 연구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36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3. 봉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8																																																						
4. 기타	○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 학내학과내의 인화,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																																																						
계		10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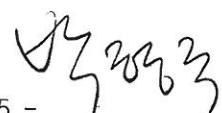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 제1차평정 평정일 평정자 학부장(주임교수) 성명 (인)</p> <p>◀ 제2차평정 평정일 평정자 대학(원) 장성명 (인)</p>	
	<u>부 칙</u> <u>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

## ■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2조(구분)</b>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담당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p> <p>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p> <p>3.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p> <p><b>제7조(겸직 제한) &lt;신설&gt;</b>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b>&lt;단서조항 신설&gt;</b></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b>제2조(구분)</b>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담당교원,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p> <p>2. 내지 3. (현행과 같음)</p> <p><b>제7조(겸직 제한) ①</b>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p> <p>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p> <p>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p> <p>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p> <p>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p> <p>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허가의 필요성</p>
<b>&lt;간서명란&gt;</b> 이사장 <u>주호석</u>	 이사      이영현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5 -

이영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u>&lt;신 설&gt;</u>	<p><u>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u></p> <p><u>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u></p> <p><u>④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u>&lt;신 설&gt;</u>	<p><u>제8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u></p> <p>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 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p> <p><u>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u></p> <p>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u>  <u>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u>&lt;신 설&gt;</u>	<p><u>제32조(해외여행) &lt;신 설&gt;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및 보강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여행허가원을 출국예정 7일 전까지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u>제32조(해외여행)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원과 휴강조치허가원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u>부 칙</u>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장      이영현

## 제 10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심규철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과 역할에 대한 대학 평가 시행 등 이에 대한 대학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준비를 위하여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를 부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주비전 4.0에서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을 발전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액션플랜으로 SDG 설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학문화 확산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명칭을 글로벌미래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은 과거 일반교양과정 중심에서 사용되던 명칭으로 최근 전문교육 분야의 학습을 원하는 교육 수요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평생교육 체제 혁신은 아주비전 4.0의 전략과제 중 하나로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대학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부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경우 조교수 또는 특별임용교원으로 학과장, 부학과장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영래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성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제5조(기구)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7 -

김영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li> </ol>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u>평생교육원</u>, 대학교육혁신원</li> <li>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li> <li>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li> <li>4. &lt;삭제 2016.8.26.&gt;</li> <li>5. 기획처장 :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lt;신 설&gt;</li> </ol>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li> <li>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교육센터</li> <li>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li> <li>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li> <li>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li> <li>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li> <li>7. 학생처 :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종합지원센터</li> <li>8. 총무처 : 예비군연대</li> <li>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li> <li>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li> <li>11. 중앙도서관 : 출판부</li> </ol>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u>글로벌미래교육원</u>, 대학교육혁신원</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기획처장 :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u>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u></li> </ol> <p>⑥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경숙      이사      이영현  
 이사장      이사      이경숙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 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 지원센터</p> <p>13. &lt;삭제 2017.2.9&gt;</p> <p>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대외협력실,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및 인권센터를 둔다.</p> <p>⑨ &lt;삭제 2018.8.31.&gt;</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제8조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 ① 대학에 학장을 두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p> <p>② 대학에 부학장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③ 대학에 학과를 설치하고, 각 학과에 학과장 을 두며, 학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과장을 둘 수 있다.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u>&lt;단서 조항 신설&gt;</u></p> <p>④ 대학 및 학과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고,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대학에 전공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⑤ 일반대학원에 학과를 설치하고, 학사과정 연계학과의 소속 학장 및 해당 학과장이 통할한다. 단, 연계학과가 없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장 을 두고,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제8조(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에 학과를 설치하고, 각 학과에 학과장 을 두며, 학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과장을 둘 수 있다.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u>다만,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경우 조교수 또는 특별임용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④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기정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⑥ 일반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 과정을 설치하고, 각 협동과정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과정, 전공을 설치하고 각 학과, 과정, 전공에 각각 학과장, 과정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⑧ 특수학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⑨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두고, 교학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b>제10조(부속기관)</b>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li> <li>2. &lt;삭제 2017.2.9&gt;</li> <li>3. <u>평생교육원</u> : 교학팀</li> <li>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li> <li>5. 대학일자리센터 : 운영팀</li> <li>6. &lt;삭제 2016.8.26.&gt;</li> <li>7.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 운영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③ 부속기관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부속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p>	<p><b>제10조(부속기관)</b>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글로벌미래교육원</u> : 교학팀</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현행과 같음)</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b>8.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 운영팀</b></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도석

이사

이사장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u>부 칙</u>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11 호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심규철 :**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2019학년도 결산 이월금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국고사업 변동에 따른 사업비 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 추경에 따른 예산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손실과 이에 따른 운영비 감축 목표 반영,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장학기금 인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3,0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규철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추경예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료 및 특수대학원 수강료 감소 등으로 운영수입은 본예산 대비 44억원 감소한 2,469억원이며, 고정성 비용과 전기이월자금 집행 등으로 운영지출은 본예산 대비 8억원 증가한 2,448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수지는 본예산 73억원 대비 52억원 감소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연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12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운영수지가 최소한 감가상각비를 충당하는 수준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학교의 운영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록금 수입 및 교육부대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가 있어 코로나 특별장학 등 추가적인 자금 지출로 학교 재정이 더 어려워져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 장 :** 이 외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윤성복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정근  
 - 21 -

이사 이영호

■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288	1,304	-16
	전입및기부금수입	1,012	1,020	-8
	교 육 부 대 수 입	133	153	-20
	교 육 외 수 입	36	36	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252	226	26
	고 정 부 채 수 입	124	124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67	109	58
	계	3,012	2,972	40
지 출	보 수	1,333	1,315	18
	관 리 운 영 비	275	281	-6
	연 구 학 생 경 비	834	838	-4
	교 육 외 비 용	6	6	0
	자 산 취 득	402	392	1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77	75	2
	유 동 부 채 지 출	10	10	0
	고 정 부 채 지 출	28	8	20
	예 비 비	2	2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5	45	0
	계	3,012	2,972	40

제 12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20년 8월 31부로 임기만료 및 보직사임의 사유로 공석 예정인 보직에 대해 그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총장의 제청과 추천 등을 받아 산학부총장에 교통시스템공학과 오영태 교수, 자연과학대학장에 화학과 김승주 교수, 의과대학장에 의학과 오영택 교수, 간호대학장에 간호학과 현명선 교수, 경영대학원장에 경영학과 성민제 교수, 교육대학원장에 영어영문학과 이혜경 교수, 병원장에 의학과 한상욱 교수, 기획조정실장에 의학과 박준성 교수, 정보혁신실장에 의학과 정재연 교수를 2020년 9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에 큰 도움이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주 호석

이 사

김 성 진

이 사

이 영현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직명	소속	직급	성명	임기	비고
산학부총장	교통신스템공학과	교수	오영태	2020.9.1.~ 2021.2.28. <sup>주1)</sup>	신임
자연과학대학장	화학과	교수	김승주	2020.9.1.~ 2022.8.31.	신임
의과대학장	의학과	교수	오영택	2020.9.1.~ 2022.8.31.	연임
간호대학장	간호학과	교수	현명선	2020.9.1.~ 2022.8.31.	신임
경영대학원장	경영학과	교수	성민제	2020.9.1.~ 2022.8.31.	신임
교육대학원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혜경	2020.9.1.~ 2022.8.31.	신임
병원장	의학과	교수	한상욱	2020.9.1.~ 2022.8.31.	연임
기획조정실장	의학과	교수	박준성	2020.9.1.~ 2022.8.31.	연임
정보혁신실장	의학과	교수	정재연	2020.9.1.~ 2022.8.31.	신임

주1) 정년예정일 : 2021.2.28.부

### 제 13 호 2020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사장** : 2020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사무처장 박재호** : 요양병원 제1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수입은 올해 2월 오픈 후 코로나 사태 여파에 의한 의료수입 감소, 자산 검수 지연 등으로 인한 리스실행 이월에 따른 차입금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수입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리스 이월에 따른 고정자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수지는 -1,204백만원이며 자산부채수지는 1,182백만원으로 전체적인 자금수지는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코로나 19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수입이 본예산 대비 19억원 감소하고, 인건비 등 의료비와 관리비는 총 15억원 감소하여 운영손실이 본예산 대비 4억원 증가한 9억원입니다. 그리고 미지급비용 등의 의료외수입과 미수금 등의 의료외비용을 고려하면 운영수지는 -12억원입니다. 한편, 운영손실 9억원에 감가상각비 25억원을 고려하면 손익계산서 상 의료손실은 34억원으로 요양병원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도석

이사

박준성

이사

이영현

이사신회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20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2020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 법인 수익사업회계(요양병원)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료수입	15,320	17,203	-1,883
	의료외수입	1,865	2,098	-233
	기타고정부채수입	0	0	0
	차입금수입	4,886	0	4,886
	기본금증가	1,500	1,500	0
	전기이월자금	3,253	2,751	502
	계	26,824	23,552	3,272
지 출	인건비	10,295	11,491	-1,196
	재료비	1,113	1,113	0
	관리비	4,799	5,108	-309
	의료외비용	2,082	1,921	161
	예비비	100	100	0
	고정자산	4,986	100	4,886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0	0	30
	고정부채상환	188	921	-733
	차기이월자금	3,231	2,798	433
	계	26,824	23,552	3,272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사장 : 제346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이영현 이사, 박형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박형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형주

이사 이영현

##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46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10시 2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20년 8월 20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김성진	김성진
이사	윤성복	윤성복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신희택	신희택
이사	김성	김성
이사	박상일	박상일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김영래	김영래
이사	박형주	박형주
이사	김선용	김선용
감사	임종인	임종인
감사	윤경식	윤경식